
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질의회시

2023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

연번	구분	질 의	답 변
1	공 통	임차건물 내 사무실로 최대 5인 내외의 지역별 행정사무실의 현장평가 대상지 선정 여부 - 근무자 하계휴가등 자제 사전공지에 필요 (해외여행 등은 1개월 이상 사전 항공권, 숙소 예약 등 필요)	'23년도 「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」는 평가 시행 주간을 평가 한 달 전에 사전 공지 하는 것으로 안내 방식을 개선하였음. 따라서, 평가 1개월 전 시행 주간을 안내받게 되며, 선정 기준은 편람을 참조하시기 바람
2		기관 특성에 따라 무상임차청사인 경우, 현장작동성평가 제외 및 결측 유무	위험성평가, 안전보건교육·인식·활동 수준, 기본 안전보건관리, 화재 위험방지조치 등은 기관이 임차청사에 해당하여도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현장작동성평가에서 제외될 수 없음. 다만, 현장작동성평가에서 기관의 지배·관리 권한이 없는 설비 및 건축물과 관련된 평가 지표는 결측 처리됨.
3	B	【B.4.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】 세부평가내용 「재해(산업재해 및 안전사고)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 등 절차의 관리」와 관련하여, 수급업체에서 발생한 재해 측정 범위 가. 공사가 용역계약 상 장소를 설정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재해까지 포함 여부 나. 수급사가 공사 외 다수의 기업들과 동일 업무(구내식당 운영 등)시 발생한 수급사의 재해까지 포함 여부 다. 재해발생 후 수급사가 공사에 재해발생 여부를 알리지 않고 자체처리한 재해까지 포함 여부(이 경우, 공사는 수급업체 미보고로 사전 인지 불가능함을 가정)	도급사업 관리범위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 10조, 제63조, 제64조에 의거하여, - 도급인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,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사업장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,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해 도급인이 지배·관리권이 있다면, 도급의 유형, 위험장소,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. 또한,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르면, -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 그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, 수급인과 수급인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게 됨. 따라서, 기관은 지배·관리권을 고려하여 수급업체의 발생 재해를 관리하기 바라며, 수급사 재해 발생 시 기관 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사전 인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